

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

- 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다올마켓스타증권투자신탁[주식]
- 2. 시행예정일: 2026년 7월 16일
- 3. 변경사항:
 - 종류 CF 수익증권 신설
 - 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
- 4. 상세 변경사항:

항 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	
운용전문인력	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	부책임용전문인력: 강봉주	부책임용전문인력: 강봉주/신하늬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종류 CF 수익증권 신설	-	<별첨 1> 참조
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종류 CF 수익증권 신설	-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(CF)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종류 CF 수익증권 신설	-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(CF)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업데이트	-	2026.07.16 - 종류 CF 수익증권 신설 - 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 (강봉주 → 강봉주/신하늬)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	부책임용전문인력: 강봉주	부책임용전문인력: 강봉주/신하늬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종류 CF 수익증권 신설	나. 종류형 구조 <종류별 가입자격> - <종류별 집합투자기구 특징> <보수 및 수수료 차이> (1)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- (2)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-	나. 종류형 구조 <종류별 가입자격> <별첨 2> 참조 <종류별 집합투자기구 특징> <별첨 1> 참조 <보수 및 수수료 차이> (1)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<별첨 3> 참조 (2)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<별첨 4> 참조

11. 매입, 환매, 전환기준	종류 CF 수익증권 신설	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-	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<별첨 2> 참조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종류 CF 수익증권 신설	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-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	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<별첨 3> 참조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별첨 4> 참조

<별첨 1>

종류(Class)		집합투자기구의 특징
기타	기관(F)	법령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, 기관투자자 및 기금,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투자자 등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
<별첨 2>

종류별	가입자격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(CF)	가.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) 나.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) 다. 3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

<별첨 3>

구분	지급비율(%)		
	선취판매수수료	후취판매수수료	환매수수료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(CF)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지급시기	매입시	-	-

<별첨 4>

구분	지급비율(연간, %)				
	집합투자 업자보수	판매회사 보수	신탁업자 보수	일반사무 관리보수	보수합계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(CF)	0.673	0.02	0.03	0.017	0.74